

제321회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3년12월13일(금)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소위원회 명칭 변경의 건
2. 2014년도 예산안(계속)
 - 가. 국회 소관
 - 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라. 대통령경호실 소관
3.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4.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안(계속)
5.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계속)
6.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규칙안(계속)
7.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계속)
8.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계속)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3.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4.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55.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56.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5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60. 국회의원 성명 표기에 관한 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소위원회 명칭 변경의 건 6
2. 2014년도 예산안(계속) 16
 - 가. 국회 소관
 - 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라. 대통령경호실 소관
3.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장 제의)(계속) 16
4.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안(의장 제의)(계속) 16
5.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의장 제의)(계속) 16
6.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의장 제의)(계속) 16
7.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의장 제의)(계속) 16

8.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의장 제의)(계속) 16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 · 양승조 · 박수현 · 강동원 · 이상민 · 이석현 · 부좌현 · 민홍철 · 이찬열 · 김영주 · 노웅래 의원 발의) 33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 · 강동원 · 김민기 · 김상희 · 김성곤 · 김승남 · 문병호 · 민병두 · 박홍근 · 배기운 · 부좌현 · 신경민 · 심재권 · 오병윤 · 우상호 · 유기홍 · 유승희 · 유은혜 · 유인태 · 이인영 · 이춘석 · 이학영 · 장하나 · 전순옥 · 진성준 · 추미애 · 한정애 · 홍의락 · 홍종학 의원 발의) 33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 의원 대표발의)(이군현 · 서상기 · 김세연 · 박인숙 · 신의진 · 이운룡 · 이한구 · 민병주 · 김한표 · 이재오 · 김용태 · 유일호 · 김종훈 의원 발의) 33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 · 김민기 · 김상희 · 김춘진 · 박주선 · 변재일 · 심재권 · 장하나 · 한명숙 · 한정애 의원 발의) 33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이목희 · 심상정 · 인재근 · 유승희 · 홍영표 · 김경협 · 강창일 · 홍의락 · 이원욱 · 임수경 · 김성주 · 심재권 의원 발의) 33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 · 최민희 · 서기호 · 장하나 · 백재현 · 박남춘 · 조정식 · 유성엽 · 추미애 · 金永柱 · 이낙연 · 민홍철 · 한정애 · 김태원 · 김선동 · 윤후덕 · 박완주 · 김관영 · 김광진 · 강동원 · 심재권 의원 발의) 33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 · 김민기 · 최원식 · 부좌현 · 변재일 · 민홍철 · 민병두 · 정성호 · 유대운 · 장병완 · 윤관석 · 한정애 · 조원진 · 김성태 · 김영록 · 이언주 · 강석호 · 이이재 · 이윤석 · 정갑윤 의원 발의) 33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조정태 · 김영록 · 이종걸 · 김춘진 · 이원욱 · 김태호 · 우윤근 · 주영순 · 안규백 · 최재성 · 문병호 의원 발의) 33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 · 이윤석 · 노영민 · 최규성 · 강창일 · 배기운 · 박수현 · 김광진 · 이춘석 · 이미경 · 김영환 의원 발의) 33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 · 배재정 · 양승조 · 백재현 · 최동익 · 박주선 · 강기정 · 김우남 · 조정식 · 박기춘 · 박홍근 의원 발의) 33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 · 이완영 · 신동우 · 이명수 · 정희수 · 하태경 · 강은희 · 황진하 · 강길부 · 안종범 의원 발의)(의안번호 6158) 33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김재원 · 홍문표 · 송광호 · 이장우 · 정우택 · 윤명희 · 김태흠 · 권성동 · 문정림 · 경대수 · 최봉홍 의원 발의) 33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 · 이낙연 · 이미경 · 배기운 · 전순옥 · 박수현 · 정진후 · 김춘진 · 서영교 · 안규백 · 이상직 · 유인태 · 홍종학 · 윤관석 · 원혜영 · 박민수 · 백균기 · 주승용 의원 발의) 33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 · 김기선 · 김상민 · 김성찬 · 김태원 · 문정림 · 박민수 · 이만우 · 조명철 · 한선교 의원 발의) 33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 · 김성태 · 강기윤 · 김한표 · 노철래 · 이강후 · 김기선 · 이이재 · 유재중 · 정문헌 · 김재경 · 최봉홍 · 김을동 의원 발의) 33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 · 정문헌 · 이만우 · 김성찬 · 이명수 · 조명철 · 김무성 · 이한성 · 윤명희 · 김종태 · 정우택 의원 발의)(의안번호 6697) 33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 · 신의진 · 이한성 · 김종태 · 정희수 · 유일호 · 이만우 · 김광립 · 박민식 · 정갑윤 · 전하진 의원 발의) 34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 · 김기준 · 황주홍 · 정호준 · 부좌현 · 전정희 · 전순옥 · 이윤석 · 서용교 · 노웅래 · 오제세 · 김동철 · 최원식 · 문병호 · 민병두 의원 발의)(의안번호 6811) 34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 · 윤호중 · 전순옥 · 박완주 · 이낙연 · 최동익 ·

	이종걸 · 송호창 · 민병두 · 장하나 의원 발의)(의안번호 6818)	34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문정림 · 이자스민 · 권성동 · 이만우 · 안홍준 · 강기윤 · 조명철 · 이명수 · 황주홍 · 이낙연 · 이인제 · 류지영 · 유기준 · 김현숙 · 김진태 · 김한표 · 이현승 · 김성주 의원 발의)	34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일 의원 대표발의)(이상일 · 유승우 · 정문헌 · 이한성 · 김세연 · 조명철 · 박인숙 · 문정림 · 최봉홍 · 남경필 의원 발의)	34
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 · 이노근 · 이채익 · 조원진 · 정의화 · 안홍준 · 이한성 · 김한표 · 정우택 · 현영희 의원 발의)	34
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이현승 · 문정림 · 윤상현 · 함진규 · 민병주 · 이명수 · 이우현 · 김한표 · 류지영 · 홍지만 · 이채익 · 이종진 의원 발의)	34
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 · 손인춘 · 최봉홍 · 주영순 · 김성찬 · 권은희 · 심학봉 · 김종태 · 김상훈 · 김태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7400)	34
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 · 김세연 · 정우택 · 이노근 · 이한성 · 김종태 · 한기호 · 정문헌 · 김태원 · 김한표 · 이장우 · 이운룡 · 진영 · 여상규 · 김장실 의원 발의)	34
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 · 윤명희 · 한명숙 · 이낙연 · 조정식 · 김춘진 · 김종태 · 김영록 · 장하나 · 부좌현 의원 발의)	34
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강은희 · 이만우 · 안종범 · 김세연 · 이진복 · 김종태 · 정갑윤 · 김상훈 · 서상기 · 이에리사 의원 발의)	34
3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 · 배재정 · 부좌현 · 배기운 · 홍의락 · 심재권 · 문병호 · 전순옥 · 신경민 · 김재윤 · 장하나 · 한명숙 · 노영민 · 전정희 의원 발의)	34
39.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 · 양승조 · 김제남 · 박수현 · 김성주 · 김경협 · 전순옥 · 이인영 · 최동익 · 최규성 · 이목희 · 부좌현 · 인재근 의원 발의)	34
40.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 · 김광진 · 김윤덕 · 박민수 · 박영선 · 박지원 · 서영교 · 오영식 · 우윤근 · 유은혜 · 이학영 · 주승용 · 최원식 의원 발의)	34
41.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 · 문희상 · 김영환 · 이낙연 · 전정희 · 김광진 · 한정애 · 정성호 · 조정식 · 주승용 의원 발의)	34
42.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 · 김우남 · 김관영 · 유성엽 · 박범계 · 박완주 · 배기운 · 진성준 · 이언주 · 서영교 · 윤후덕 의원 발의)	34
43.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 · 김민기 · 김윤덕 · 김재윤 · 박남춘 · 박범계 · 박홍근 · 신경민 · 안민석 · 유은혜 · 유인태 · 이춘석 · 전해철 · 진선미 · 진성준 · 추미애 의원 발의)	34
44.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문정림 · 이자스민 · 권성동 · 이만우 · 안홍준 · 강기윤 · 조명철 · 이명수 · 황주홍 · 이낙연 · 이인제 · 류지영 · 유기준 · 김현숙 · 김진태 · 김한표 · 이현승 · 김성주 의원 발의)	34
45.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 · 진성준 · 이학영 · 김민기 · 김제남 · 은수미 · 남인순 · 박홍근 · 최민희 · 박수현 · 배재정 · 박원석 · 윤호중 · 박완주 · 김기식 · 홍익표 · 홍종학 · 부좌현 · 이원욱 · 장하나 · 김광진 · 김성주 · 김재윤 의원 발의) ...	34
46.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 · 이노근 · 이채익 · 조원진 · 정의화 · 안홍준 · 김한표 · 정우택 · 김동완 · 현영희 의원 발의)	35
47.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 · 진성준 · 김성주 · 장하나 · 박민수 · 정진후 · 한정애 · 민병두 · 홍종학 · 이인영 · 박지원 · 한명숙 · 김현미 ·	

- 김민기·윤관석·전순옥·김성곤·강동원 의원 발의) 35
4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신경민·정청래·전순옥·윤관석·배재정·김성곤·배기운·강창일·김상희·김윤덕·노웅래·정진후·진성준·전해철·정세균·남인순·김승남 의원 발의) 35
4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 의원 대표발의)(김제남·서기호·은수미·남인순·심상정·강동원·박원석·전순옥·정진후·부좌현 의원 발의) 35
5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김성곤·전순옥·윤관석·전병헌·배기운·김광진·인재근·남인순·유기홍·유성엽 의원 발의) 35
5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김성태·강기운·김한표·노철래·이강후·이이재·유재중·정문헌·김재경·최봉홍·김을동 의원 발의) 35
5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이상직·최원식·배기운·유성엽·박지원·최민희·윤후덕·유효중·장하나·김성곤·문병호·김재윤·전순옥·노웅래·김승남 의원 발의) 35
54.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이명수·윤명희·황영철·유승우·최봉홍·이만우·조명철·이노근·이한성 의원 발의) 35
55.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이상직·최원식·배기운·유성엽·박지원·최민희·윤후덕·유효중·장하나·김성곤·문병호·김재윤·전순옥·노웅래·김승남 의원 발의) 35
56.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김민기·은수미·박홍근·박수현·배재정·홍종학·박원석·진성준·남인순·홍익표·이학영·김제남·유효중·김기식·박완주·부좌현·이원욱·장하나·김광진·김성주·김재윤·최민희 의원 발의) 35
5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이만우·이한성·문정림·이자스민·심재철·정의화·최동익·류지영·윤재옥·李宰榮 의원 발의) 35
5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강은희·이만우·윤상현·이현승·이채익·김한표·신동우·문정림·김태원·심윤조·심재철·박명재·김종태 의원 발의) 35
5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배재정·부좌현·정청래·김우남·박수현·배기운·박남춘·김광진·은수미·김재윤·정진후·박원석·김경협·심상정·강동원·우원식·한정애·홍영표·한명숙·전병헌 의원 발의) 35
60. 국회의원 성명 표기에 관한 규칙안(장윤석·이한성·정문헌·이만우·이주영·유승우·박덕흠·박성호·김우남·경대수 의원 발의) 35

(15시38분 개의)

○위원장 **최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민주당 부좌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 부좌현 위원입니다.

지역은 경기도 안산을 출신이고요. 현재 상임위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1차 연도에 운영위원으로서 위원회에서 활동한 바가 있는데 이제 2차 연도 전반기를 다 보낸 이 시점에 다시 와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활동 잘해 오신 앞선 우리 선배님들과 잘 협력해서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감사합니다.

부좌현 위원님 우리 위원회에 오신 것을 축하를 드리고 우리 운영위원회는 원내대표단으로 구성된 그런 위원회인 만큼 원활한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청원심사소위원으로 앞으로 활동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소위원회 명칭 변경의 건

(15시40분)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명칭 변경의 건을 상정을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김태흠 위원 잠깐만,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예?

○김태흠 위원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예, 짧게 하십시오.

○김태흠 위원 본 위원은 지난 11월 26일 국회 운영위 6차 회의에서 국회 청소용역 근로자 직접고용과 관련해 몇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일부 위원은 본 위원의 발언을 악의적으로 심각하게 왜곡, 유포해 본 위원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습니다. 당일 회의 중 본 위원이 민주당 위원의 발언 왜곡에 대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해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성호 위원께서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진실만은 명확히 밝혀 두고자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의 발언의 취지는 국회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직접고용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직접고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고 직접고용에 앞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운영위 회의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청소용역 근로자 직접고용 시 2015년 말까지 계약돼 있는 국회 내 다른 시설관리용역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점, 또 직접고용 시 발생하는 정년 60세를 초과하는 61세 이상 근로자가 약 30% 가까이 됩니다. 이에 대한 고용 문제, 잦은 파업 발생 우려로 인한 노무관리 문제, 81년 이후 30여 년 넘게 용역으로 운영해 온 민영화 취지 고려 문제, 국회 조직 방대화 문제, 기재부와 의 예산 비목 조정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위원은 본 위원의 발언에 대해 국회 청소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반대했다, 굉장히 심각한 위헌적 발언이다, 사무총장이 정규직 전환 안 하면 이런 위헌적 발언에 따라서 국회가 정규직 안 한 것이라 생각한다, 노동 3권을 부정했다라고 하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왜곡했습니다.

본 위원은 직접고용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2015년 계약이 종료되는 시설관리용역 근로자와 형평성을 맞춰 같이하든가 아니면 먼저 직접고용

을 도입한 서울시의 안착 여부를 확인 후 도입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노동3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 발언 중 ‘무기계약직이 되면 이 사람들 이제 노동3권이 보장돼요.’라고 분명하게 언급한 부분이 있고 ‘특 하면 파업 들어가고 뭐 하고 하면 이것 어떻게 관리하겠어요?’라는 발언의 취지도 전후 문맥을 살펴봐도 알 수 있듯이 노동3권의 보장을 전제로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발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위원과 을지로위원회는 본 위원의 발언을 완벽하게 왜곡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을지로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난하는 성명서까지 발표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받은 진보 언론들까지도 왜곡된 사실을 기사화해 본 위원의 명예가 심대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또 언론 보도를 보고 청소용역 근로자들이 운영위 회의장으로 본 위원을 찾아왔고 일부 진보 언론은 본 위원에게 갑작스레 고개 숙이며 인사하는 한 아주머니와 당황해하며 서 있는 본 위원의 사진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청소부가 인사를 나누는 사진, 본 위원이 총선 때 유권자들에게 절하는 사진을 악의적으로 대비시켜 보도하고 패러디한 사진까지 실으며 마녀사냥식으로 저를 비난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악의적 왜곡으로 인해 인터넷, SNS상에서는 저를 비난하는 글들이 폭주했습니다. 왜 악플에 시달렸던 연예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는 요즘 ‘입장 바꿔 생각을 해 봐라’라는 말을 자주 떠올립니다. 만약 민주당 위원들이 저와 입장을 바꿔 생각했다면 절대 그렇게 악의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국회의원은 하나의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의견을 수용하고 말고는 해당 기관의 몫입니다. 생각과 견해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한다 해도 사실을 왜곡하며 상대를 매도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청소용역 근로자 직접고용 문제는 국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충분한 검토 없이 시작하면 그 영향이 전 국가기관, 국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검토가 이루어질

때까지 국회는 용역 근로자분들의 처우개선, 복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를 비난하기 전에 상대가 주장하는 사실이 뭔지, 취지가 뭔지 생각해 보는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졌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은수미 위원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 최경환 예, 질의하시는데요, 오늘 다른 안건 처리할 게 많으니까 서로 상대를 자극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은수미 위원 예.

지금 의사일정을 보면 청소노동자 직고용에 관한 직제개편안이 올라오지 않았습시다. 제가 알기로는 소위에서 이 문제로 계속 논란이 불거졌고 또한 소위에서 사무처 직제개편안을 통과시키는 전제조건으로 사무처의 분명한 입장을 듣고 또한 이 직고용 약속을, 이미 2011년에 했던 직고용 약속, 더군다나 그당시에 해당이 400여명 됐는데 대부분이 전환됐으나 그당시 약속되었던 청소노동자만 현재까지 직고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을 의사일정으로 올려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박민수 위원 위원장님, 30초만……

○위원장 최경환 예.

○박민수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김태흠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그때 들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직접고용 찬성하십니까?

위원장님,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 속기록 보고 한번 확인하든지……

○위원장 최경환 자, 그 부분은 그동안 소위원회 또 소위, 그리고 또 여야 간사 간에 조금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를 하는 걸 봐 가면서 다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위원 의사일정으로 좀 올려 주십시오.

○홍익표 위원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예.

○홍익표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운영위 법안소위에서 분명히 입장을 물었는데 답변이 제대로 안 됐습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우리 청소용역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서 국회사무처가 분명한 답을 달라고 그랬습시다. 하

겠단, 못 하겠단, 아니면 여야가 합의하면 하겠단,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이후에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사무처 직제개편과 관련된 안을 다룰 수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고요. 그래서 오늘 아까 사무총장께서 직접 이 내용을 밝히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듣고 회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경환 잠깐만 계셔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여야 간에, 간사 간에 협의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제 얘기를 좀 들어 보시고 그다음에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위원회는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인사청문제도 그리고 대정부질문제도, 상시국감제도 등 국회운영 제도개혁 방안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또 내실 있는 그런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를 다룰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보다는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많은 국회 개혁 관련 법률안들이 회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을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명칭을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성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환 예.

○정성호 위원 관련해 갖고 지금 어떻게 국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된 제도개선 문제를 논의하는 소위원회를 지금 새로 만들면서 기존의 법안심사위원회를 바꾸는 건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청소노동자들 직접고용 문제를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제에 앞서서 사무총장께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 먼저 해 주셔야 돼요, 이것 관련해서.

그러서 갖고, 언제까지 이 문제를 계속 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사무처의 입장을 갖고서 밝혀 줘야만 저희들이 전향적인 입장을 정리할 수 있으니까 일단 사무총장께서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예, 그러면 사무총장,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사무총장 정진석 먼저 우리 운영위 여야 위원

님들께서 국회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문제를 비롯한 국회 내의 민간인 근로자의 처우개선 문제, 그리고 고용안정화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볼 때 청소용역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방식을 직접고용으로 할 것이냐, 위탁고용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고 이념적인 선택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선택의 문제일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청소용역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진행시킬 것이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신분·고용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확실한 담보안을 마련하냐 등등의 문제인 것이지 이게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청소 업무는 한 30여 년 동안 외주 위탁 방식으로, 아웃소싱 방식으로 진행을 해 오면서 사실은 별다른 큰 탈이 없었고 국회뿐만 아니라 법원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모두 간접고용 방식으로 수십 년 동안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국회 내에 다른 민간인 근로자들도 있습니다만 청소용역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일부 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직접고용이 더 나은 방식이다라는 주장이 제기되어서 사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방향에 대해서. 그러나 다만 이 문제는 사무처에서 이 방향으로 가자라고 결정해서 모든 것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조금 전에 김태흠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셨듯이 이런 문제는 근로자들의 정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인가, 그것만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올시다. 왜냐하면 지금 무기계약직 직접고용을 해가지고 무기계약직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려면 사실은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거기에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4명의 근로자들 중에서 30%에 해당하는 60명 정도는 결국은 또 비정규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아니면 또 그 계약에서 이탈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금의 비정규직 문제를 정규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처방전이 아닌 것입니다. 이보다는 오히려 이분들의 처우를 어떻게 개선해 줄 수 있는 문제인가, 신분을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해야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재부를 상대로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임금 인상을 위해서 지금 증액을 요구를 하고 있고 심사중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협의가 끝나지 않았습시다만 이 문제는 위원님들 노력으로 얼마든지 관철시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번 사안은 어떤 국회사무처에만 해당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소용역을 포함한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걸쳐서 국가기관 전체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방향성을 정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 바로 지금 당장,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12월 31일에 만료되니까 당장 12월 중에 방향을 정하라고,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이 문제는 국회사무처 차원에서만 혼자서 정책 변경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점이 있다, 그래서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고 관련 정부 부처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협의를 위한 시간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게 당장 12월 달에 매듭을 짓지 않고 1월 달, 2월 달까지는 협의할 시간도 필요하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여야 위원님들께 제가 호소드린 것입니다.

이게 당장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국회 204명 청소용역 근로자들에게는 어떠한 신분 변경도 가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그 용역업체 계약기간은 12월 31일이지만 한두 달 더 한다고 그래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는 그 계약이 연장되도록 명시되어 있고 새로운 업체가 되든 그 업체가 계속하든 현재 일하고 있는 모든 청소용역 근로자들은 단 한 사람의 예외 없이 전원 고용승계가 되도록 강제규정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우리 국회 내의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하등의 신분의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어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아닌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청소 업무를 운영하느냐의 그러한 정책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정책 선택을, 모든 국가기관이 여전히 수십 년 동안 아무 탈 없이 해 온 간접고용을

우리 국회사무처만 유독 직접고용으로 당장 성급하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직접고용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좀 더 심도 있는 진지한 검토를 거쳐서 완벽한 틀을 좀 갖추는 것이 다른 기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선도적으로 취할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지금 국회사무처는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은수미 위원 제가 발언을 좀……

○위원장 최경환 잠깐만요. 잠깐만 계셔 보세요.

○은수미 위원 아니,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를 결정을……

○위원장 최경환 아니, 잠깐만 계셔 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아주 격하게 또 활발하게 됐고, 또 아마 이번에 소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구성하기로 했던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에 하나의 별도의 의제로 넣어서 우리가 별도의 팀을 구성을 해서……

○은수미 위원 그것은 곤란합니다.

○위원장 최경환 한번 논의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오늘 지금 한다고 합의가 되지 않지 않겠어요?

○은수미 위원 아니요, 저는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금 사무처에서 자기네들 인원 증원으로 24명을 증원시켜 달라고 가져왔으면서 이미 2011년부터 약속이 됐고 저희 의원실에서 8·9·10월서부터 계속 검토를 해 보라라고 얘기한 거고 예산에 있어서도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얘기를 거기다가 인권과 정의의 문제를 효율성으로 덮어 가면서 이런 식으로 호도하면 안 됩니다. 저는 국회사무처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자기 직원 24명 늘려 달라고 하기 전에 직고용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 최경환 자, 은수미 위원님!

○은수미 위원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조차도 효율성 따져 가면서 옛 바뀐 먹듯이 바꾸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경환 저, 은수미 위원님, 알겠는데

요.

○은수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무처의 입장은 들었고요. 저는 전체회의에서 이것을 분명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 직제 개편은 통과를 시켜 주고 그래서 24명 공무원 증가시켜 주고……

단지 직고용입니다. 공무원으로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무기계약직으로 예산 증가도 없이 직고용으로 해 달라는 이미 2년이나 된 새누리당의 약속을 지켜 달라는 논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논의를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최경환 아니, 잠깐만……

○은수미 위원 저는 다시 소위 만들어서 늦게 다시 검토하는 것 불가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1년에……

○위원장 최경환 아니, 은수미 위원님!

○은수미 위원 아니,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회의 진행에 좀 협조해 주세요! 혼자만 계속 그렇게 주장하면 됩니까?

○은수미 위원 아니, 지금 최경환 원내대표님께서 직고용을 거부하는 안을 말씀하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아니, 제가 언제 거부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결론이 안 나잖아요?

○은수미 위원 연내에 통과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시간이 없는 문제라서 그러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경환 여기가 은수미 위원님 혼자서 결정하는 회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해철 위원 시간 제한해서 서로 의사진행 발언 해요.

○정진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저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제가 먼저 손을 들었으니까……

○류지영 위원 여야 교대로……

○홍익표 위원 한 2분씩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위원장 최경환 자,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은 이제 1분씩만 하세요.

좋아, 그러면 2분 이내에 하세요.

마이크 끄세요.

○김현 위원 그러면 저 주세요.

○홍익표 위원 의사진행발언 시간 주시고 교대로 주십시오.

○위원장 최경환 아니, 여야 한 분씩만 하세요.

○**김현 위원** 아니, 저 주시라니까요. 예산소위 때 얘기 나온 겁니다, 이것.

○**이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분씩 교대로……

○**위원장 최경환** 자, 정진후 위원님 먼저 오래 전에 손을 드셨으니까 정진후 위원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완영 위원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정진후 위원** 정진후입니다.

총장님의 답변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효율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효율성에 관련된 문제에 앞서서 2011년도 국회의장께서 직고용을 약속하셨고 국회사무처가 보도자료까지를 내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들 앞에 약속한 내용입니다.

2013년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 이전까지 이분들을 직고용하기 위한 어떤 연구 결과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효율성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고 국가기관이 수십 년간 이것을 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고 더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 시기에 국회의장께서는 이런 내용을 몰라서 약속을 하셨고 대통령께서 당선되시자마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던 것은 이 사항을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그리고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그리고 노동정책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가를 단적으로 지금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총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셔도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2011년에 약속한 내용을 국회사무처가 2013년 12월 31일이 될 때까지 어떤 연구를 했고 이분들을 직고용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했고 이런 근거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에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총장님은 효율성을 말씀하시지만 차장님이나 실무자들은 기재부에서 비목 변경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무총장 정진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완영 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위원장 최경환** 의사진행발언이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이완영 위원** 위원장님께 진행을 잘해 주십사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첫 번째, 지금 잘못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안소위의 명칭을 변경하자고 나왔는데 계속 청소용역 문제를 여기서 논의하는 자체도 잘못됐습니다. 일단 명칭 변경을 해 놓고 소위에서 이것을 다룰 건지 안 다룰 건지를 얘기해 나가야지 명칭 변경에서 왜 이게 논의가 되어야 되는지, 그것은 중지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청소용역 근로자 문제는 이미 예산소위에서 충분히 안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예산소위원회 심사를 우리 전체회의에 올려놓고 나서 이것을 논의를 해 주셔야 되지 야당이 먼저 제기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왜 먼저 논의를 합니까? 정식으로 안전을 올려놓고 우리가 통과하면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수미 위원** 안전이 어디 있어요?

○**전해철 위원** 안전이 어디에 있어요?

○**위원장 최경환** 김현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의사진행발언.

○**김현 위원** 이완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으면요, 계약기간이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난번 예산소위 때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예산소위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의제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은수미 위원이 제안한 것이 하등 무리가 없기 때문에 다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잠깐만요. 우리 정성호 위원……

○**전해철 위원** 제가 할게요. 의사진행발언 짧게 받으세요. 짧게 할게요.

○**이완영 위원** 여야 한 분씩만 하자고 했으니까……

○**전해철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시간 지키고 받는 겁니다.

제가 법안심사소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것을 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세 번의 회의를 하면서 이 건 가지고 전혀 진전이 안 됐어요. 그런 면에서 다시 그리 넘기자

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니까 안 되고요. 최종적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오늘 의결을 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지금 다시 법안심사소위 가자는 것은 같은 이야기니까 절대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예를 들면 다시 소위로 넘기려고 그러면 시한을 정해서, 예를 들어 12월 24일,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언제 시한까지 심사소위에서 논의하겠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넘겨서는 안 되고.

제가 추가로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이것을 왜 앞에서 이야기하느냐, 당연히 이게 선결문제가 되어야 됩니다. 의안으로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의안도 안 올라왔는데 지금 의사진행발언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결하면 되겠습니까? 맞지 않고.

그다음에 내용과 관련해서도 지금 총장께서 답변은 필요 없지만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딱 하나만 이야기하면 이전에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공공부문에서 최초로 하겠다, 국회에서’ 그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법안심사소위로 가면 절대 안 되고 내려가려면, 보내려면 시한 정도는 명시해서 논의할 수 있게 해야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김한표 위원** 예, 저도……

○**이우현 위원** 위원장님께서 마무리를 해서 좀 진행하시지요.

○**홍익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환** 짧게 하세요.

그러면 홍익표 위원님 마지막으로 의사진행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말씀하세요.

○**홍익표 위원** 저는 안타깝지만 제 입장을 좀 정확히 밝히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013년 12월입니다. 2년 전에 이미 18대 국회에서 당시 국회의장인 박희태 의장님께서 약속한 사안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국회사무처가 뭘 했습니까? 청소용역노동자하고 간담회라도 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불비한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봤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와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사자들이 원하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밝혔다고 OECD에서 권고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로 지적하는 것이 비정규직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 합의였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정규직화 문제 이것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양측의 대선후보께서 약속을 했던 사안입니다. 이미 약속했던 사안이고 사회적 합의도 모여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끝까지 외면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법안소위에서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저는 ‘유시유종’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짓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양심에 의해서 더 이상 이 청소용역노동자 정규직화 문제에 대한 결론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거나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퇴장)

○**위원장 최경환**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고……

○**김한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환** 잠깐만, 제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고 또 깊은 토론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맺기는, 저는 현실적으로 이 이슈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 여기에서 하고, 그 대신에 아까 우리 전해철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시한을 정해서 여기에 한 아이টে으로, 중요한 아이টে으로 넣어서 그렇게 해서 다시 심도 있는 논의를 더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뒤로 미루어지는 것이니까 일단 국회에서, 정말 여야가 합의하면 합의한 것을 사무처는 수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노동자들 직접 고용이라든가 고용 안정 문제 관련해서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여야 합의가 된다고 하면 그 결론을 따를 수 있습니까?

○**사무총장 정진석** 여야 위원님들께서 결론을 도출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은 존중을 하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전해철 위원도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이 법안심사소위, 이름을 바꿔 가지고 운영제도개선소위로 가 가지고 이것이 마냥 지연되기만 한다고 하면 또 이 문제가 더 꼬아질 우려가 있으니까 시한을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정도는 왜야……

○**위원장 최경환**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시한을 언제까지, 한 두 달……

○**은수미 위원** 한 가지만 더요.
그러면 저는 사무처 직제 개편하는 데 한꺼번에…… 이것이 사무처의 일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은수미 위원님, 그 문제는 사무처 직제하고는 무관한 문제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은수미 위원** 아닙니다. 사무처 직제개편안 전체를 소위에 넘기지 않으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위원장 최경환**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2월 말까지 결론을 내도록 하면 될까요?

○**은수미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해철 위원** 이 달 말 안에 해야지요.

○**위원장 최경환** 아니, 아까 사무총장……

○**은수미 위원** 여야 간사님,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이것은 사무처 직제개편안 전체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위원장 최경환** 사무총장, 2월 말까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은수미 위원** 무슨 소리를 하세요!

○**김현 위원** 왜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요!

○**위원장 최경환** 아까 계약기간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우현 위원** 60세 넘으신 분들에 대해 가지고……

○**은수미 위원** 다른 데는 다 정년을 70세까지 한 데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제출을 해 드릴게요.

○**이우현 위원** 사무처에서도 좀 준비하고 이렇게 토론하면 되지 이것을 꼭……

○**정진후 위원** 12월 말까지 하시죠.

○**은수미 위원** 아니요, 12월 말까지는 안 되지요. 12월 24일이요.

○**김현 위원** 2013년 12월 31일까지가 계약기간이에요.

○**이우현 위원** 계약기간 넘어도 관계없다고 그랬잖아요, 자동 연장된다고.

○**위원장 최경환** 그런데 계약기간 넘어도 고용 안정은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은수미 위원**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장내 소란)

○**위원장 최경환**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조용히 계세요!

○**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의사진행발언 혼자만 하면 되는 겁니까?

○**김현 위원** 혼자 안 했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잠깐만 계세요.

○**김현 위원** 저 아까 30초 했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아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김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회의 진행을 원만하게 하려면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전해철 위원** 그래요, 의사진행발언 2분씩 짧게 짧게 주세요.

○**위원장 최경환** 여기 있는 스물여섯 분이 다 그렇게 하면 언제 회의를 합니까?

○**은수미 위원** 다 해야지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병헌 위원** 충분히 발언하도록 해 주세요.

○**김현 위원** 그리고 자꾸 위원장님은…… 사실에 근거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혼자 무슨 발언을 합니까? 저 아까 2분 주는 것 30초밖에 안 했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지금 여당 위원들은 의사진행발언 하나도 안 드렸습니다.

○**김현 위원** 여당 위원들이 신청하면 주시면 되는 것이지 왜 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혼자만 발언한다고 얘기하십니까? 편견이 있으십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위원장 최경환** 아니, 지금 여기 두 번째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지금 어디 있어요!

○**김현 위원** 그것이 무슨 관례입니까? 의사진행발언 혼자 합니까?

○**위원장 최경환** 아니, 한 번도 안 한 위원도 있는데 두 번 하는 것은……

○**김현 위원** 한 번도 안 한 분 시키시면 되잖아요,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환** 안 맞잖아요!

○**전병헌 위원** 원만하게 운영을 하세요.

○**김현 위원** 아니, 12월 31까지 계약기간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미 사무총장께서 위원들께서 논의를 해 주신다면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의장이 바뀌었다고 바뀐 의장, 이전에 의장님이 약속한 그것 변경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고용 승계하셔야 됩니다, 공과는 공은 공대로과는 과대로입니다.

그러면 박희태 국회의장이 2011년도에 이미 약속을 하였고 사무총장은 논의를 하면 따르겠다고 했으면 그것을 뭐하러 내년 2월까지 미룹니까? 12월 31일 이전에 국회에서 논의하는 일자를 잡으시면 되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자꾸 합니까?

○**위원장 최경환** 현실적으로 12월 말까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충분히 시간을 갖고……

○**은수미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두 달 정도 시간을 갖는 것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아니요. 안 됩니다.

원내대표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최경환** 그러면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 명칭 변경하는 것은 일단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아니요. 좀 무례하지만……

○**홍지만 위원** 여기에 은수미 위원님밖에 없습니까? 왜 혼자 계속 얘기하세요?

○**은수미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세요. 왜 자꾸 발언하는 것을 방해하세요?

○**전병헌 위원** 지금 논란이, 소위원회 명칭 변경의 건인데요. 소위원회 명칭 변경은 지금 법안소위원회를 국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상시 국감의 문제 그리고 예결위의 일반 상임위화 문제 그리고 청문회 제도 개선의 문제 그리고 국회 대정부질문 등 여러 가지 개선의 문제 등

국회 운영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여야의 공감대 속에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매우 의미 있고 뜻깊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 선진화가 말만 선진화가 아니라 운영과 제도적 측면에서도 일정하게 선진적인 틀을 갖추는 첫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소위원회 명칭 변경의 건은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후에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문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회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존의 법안심사소위원들께서는 계속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방금 명칭 변경된 소위원회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단을 설치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문단 구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병헌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다음 2014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위원님들 간에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견해와 의견과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난 소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했습니다마는 소위원회에서 해결이 안 된 채로 미완의 과제로 넘겨져 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오늘 열린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충분한 토론을 가진 후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크게 토론의 여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한 논의를 한 뒤에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보여서 이 부분에 대

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우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환 예.

○이우현 위원 이우현 위원입니다.

물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했고 우리 국회사무총장께서도 그 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짧은 시간에 기재부와 의 협의관계 또 60세 이상 되신 분들의 관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했을 때의 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시간이 한두 달 간다고 계약이 해지되거나 자연적으로 1년이나 2년으로 연장되는 계약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토의하고,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도 아까 총장 말씀대로 정말 정확히 그분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지난 박희태 의장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려고 했던 법안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이런 것 다 한 다음에 여야 위원들이 충분하게 오늘 늦게라도 대화하면 되는데 꼭 이것 시작도 안 해 가지고, 지금 저 의원님들도 와서 기다리시고 그러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걸 가지고 지금 많은 토론을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총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안소위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또 토의하면 된다고 보고요.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한 대로 1월 말까지, 그 안에 여러 차례 대화해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정규직으로 했을 때의 그런 관계 또 60세 이상 되신 분들에 대한, 30% 되는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게 좀더 심도 있게 되어야지 정부는 지금 여러 가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는 거에 무조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다. 또 기재부하고 의 협의관계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이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법안소위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1월 말까지 조금 더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윤상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환 예.

○윤상현 위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단 예산안하고 모든 안건에 대해서 처리하신 다음에 말씀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은수미 위원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김한표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하

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잠깐만 계서 보세요 잠깐만 계서 보시고,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에도 토론을 많이 했고 또 소위에서도 많이 했는데 결론이 못 나온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지금 여기서 결론을 내시자고 하면 결론이 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아까 솔직히 여야 간사 간에 이런저런 논의를 좀 했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일단 운영제도개선소위가 오늘 새로 구성됐으니까 거기에도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2월 말, 2월 말이 너무 길다면 1월 말까지도 좋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야 되지 이 자리에서 그렇게 토론해도 결론 안 나는데 이 자리에서 이걸 하자 그러면 회의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으니까 회의진행에 좀 협조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은수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환 하세요, 마지막으로.

○은수미 위원 몇 가지 우선으로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2011년에 400여 명의 정규직 전환을 공언하고 사실은 일정한 법적인 손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빠졌던 유일한 이유는 뭐였느냐 하면요,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을 보시면 확인을 하시겠지만 ‘2013년 12월 31일로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 왜냐하면 해당 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끝난 이후에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무총장님이 다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11월 25일이 될지 뭐가 될지, 만약 더 논의를 하게 될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업체에서는 계약이 해지돼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직고용도 안 되고, 그러면 해당 업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약 연장을 하시겠습니까?

○사무총장 정진석 해당 업체는요, 일단 12월 31일까지가 계약기간이지만 그 계약기간 안에 재계약을 하거나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거나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그런 일을 마칠 때까지는 현상유지를 하도록 지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고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은수미 위원 현상유지를 한다는 것은 만약 우리가 12월……

○신동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아니, 지금 여쭙고 보고 있잖아요!

○사무총장 정진석 은수미 위원님께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12월 31일까지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갱신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1월 31일 날 새로운 정책이 결정돼 가지고 직접 고용을 하게 됐다 그러면 그때 새롭게 또 바꿀 수도 있는 문제고요, 새로운 업체를 그때 변경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명시해 놔습니다. 그 부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시일을 두고 결정만 하면 되는 문제입니까, 이게?

○사무총장 정진석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업체 선정 문제는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해 놔기 때문에 우리 근로자들의 고용문제에 대해서 아무 지장을 주지 않게 돼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러면 일단 기 업체하고 예를 들어서 15일이면 15일, 한 달이면 한 달 연장되게 돼 있는 겁니까?

○사무총장 정진석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약서에 의하면 ‘제삼자와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신동우 위원 사무총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사무총장 정진석 예.

○신동우 위원 조금 질서 있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좋습니다, 시간 맞춰서. 그런데 지금 질의답변 시간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이게 좀 무질서하지 않습니까? 저는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그다음에 건건에 대한 논의는 별도 의견을 표출하면서 질의하고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경환 알겠습니다.

김한표 위원도 아까부터 계속……

○김한표 위원 위원장님, 오늘 의사진행발언 자체를 편파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 발언을 경청은 해야 됩니다. 저희들한테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은수미 위원님께서 말씀 중에 ‘새누리당이 약속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새누리당이 약속한 바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장님께서 소속이 무소속이시라는 것을 혹시 간과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의안 자체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국회운영제도개선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 부분을 전체회의로 올렸다는 것은 몇 분이 안 계시는 거기에서도 이걸을 좁히지 못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 데서 어떻게 결론을 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의안으로 상정된 이 부분 자체를 먼저 의논하시고 난 다음에 지혜를 모아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알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환 예.

○전해철 위원 제가 시한을 최초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요.

예산소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안소위에서 할 때는 이게 많은 시간이 걸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결정과 결단이지. 기획재정부 의견이라든지 관계부처 의견도 충분히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애초에 시한이라는 것을 오늘 자꾸 이렇게 논쟁을 하니까 한 1주일 뒤라도 하자, 한 1주일 뒤로 해 놓으면…… 또 하나가 이 사무처의 의견도 있지만 여야의 합의가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나와 있는 것을, 결정과 결단이 필요하다 해서 한 1주일 정도 뒤를 생각하고 저는 시한이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2월 말 이야기하신 것은 전혀 맞지 않고요.

그래서 한 12월 말까지 결론을 내려라 이 정도 하시면 충분히, 여건이나 조사는 다 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 12월 말까지 정도로 우리 새로 바뀐 위원회 소위에 넘겨서 결론 내려라 이렇게 의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강은희 위원님!

○강은희 위원 국회사무처에서 그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내부적으로 논의를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하지만 12월 말로 위탁계약이 예정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청소 고용 문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문제이기 전에 전체 노동문제에 대한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업체와 근로자들이 위탁고용 형태로 운영이 되고, 위탁고용의 효율성과 전문성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노동시장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의 노동시장에 변형을 주고 또 다른 방향으로 모

색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서 청소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나 복리후생을 앞장서서 하는 부분에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가 전체로 봤을 때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 출연기관, 공공기관에 들어가 있는 많은 위탁고용의 문제는 생각보다는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소 고용 근로자들은 그 업체에 대해서 비정규직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각 공공기관에다 위탁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더 아주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국가 전체의 고용시스템의 한 부분을 흔들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 개인 위원이 마치 눈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정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 차원의 고용시스템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짧은 기간에 결론 낸다고, 여기에서 그렇게 간단하게 결론 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경환 그래서 아까……

○정성호 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이게 지금 의사진행발언으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일단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이게 논의가 됐었고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가 돼 가지고 사실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좀더 논의하자 이런 의견 합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산심사 결과보고를 받고 어차피 사무총장께 이것에 대한 질의응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나 법안에 관련해 가지고 직제개편안 관련해서? 그때 질의응답을 같이 좀더 하는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최경환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2. 2014년도 예산안(계속)

가. 국회 소관

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라. 대통령경호실 소관

3.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장 제의)(계속)

4.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안(의장 제의)(계속)

5.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의장 제의)(계속)

6.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의장 제의)(계속)

7.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의장 제의)(계속)

8.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의장 제의)(계속)

(16시26분)

○위원장 최경환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국회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경호실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국회 규칙안 6건 등 총 7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성호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정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과 12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본 위원과 강은희 위원, 신동우 위원, 윤재옥 위원, 이완영 위원, 이현승 위원, 김현 위원, 박민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체토론 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중심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후생관 입점업체 경쟁입찰 결과를 반영하여 총 2억 8012만 원이 증액된 15억 612만 원으로 수정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총 4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5083억 41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국회 소속기관별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회사무처 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19억 6300만 원이 증액된 4395억 84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첫째,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 대상자가 관련법 개정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원금 예산 중 19억 원을 감액하고,

둘째,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경비의 경우 활용도 저조를 감안하여 관련 예산 중 인터넷 의사중계 장비 개선경비만 반영하고자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첫째, 의정활동지원 인턴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초과근무수당을 현재의 월 16시간에서 의원보좌직원과 같이 32시간으로 확대하고 명절상여금을 신규로 지급하기 위하여 총 19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둘째, 국회의원 수행비서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운전점무수당을 월 3만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데 필요한 예산 4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국회방송의 HD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경비 6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넷째, 제2의원회관 유리외벽으로 인한 실내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장치 설치경비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밖에 헌정회가 발간하는 헌정지에 이념편향적인 글이 게재되어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국회도서관 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19억 1800만 원 증액된 408억 15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첫째, 국회도서관의 자료수집 기능 강화와 의회도서관으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도서관 자료 확충 예산을 10억 원 증액하고,

둘째, 전자도서관 DB 구축 사업의 예산을 전년 수준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중학생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 계상된 40만 원을 삭감한 148억 66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2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75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은,

첫째, 해외자료조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계약직 3인의 인건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둘째, 행정실무원의 부족한 인건비 및 연금지급금 충당을 위하여 1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조정된 내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1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256억 36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은,

첫째, 2014년에 개설하는 대전인권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른 지역사무소의 사례를 감안하여 숙소 매입비 등 6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둘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추가 보수 및 성과급으로 6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셋째,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학교 인권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3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넷째, 최근 가정 내 아동폭력 및 아동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감안하여 그 실태조사와 예방 캠페인 실시 등을 위하여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조정된 내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2900만 원 감액된 842억 34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정내역은,

첫째, 기본경비 중 여비는 금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2900만 원을 감액하고,

둘째, 국정운영 업무지원비 중 특수활동비에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나 대통령실 인력 규모에 별다른 변동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증액분 중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청와대 시설물 개선 사업은 그동안 국회가 여러 차례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노후된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비로 1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대통령경호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본경비 및 사업비가 감액 편성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청와대 화재방 방어체계 증강사업비 12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 예산안과 중복되는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실 소관 특수활동비와 관련하여서는 개략적인 기능별 규모라도 제시하는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환** 정성호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현 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국회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윤상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윤상현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안 및 국회사무처 등 4개 기관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5일과 11일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회의를 열어 본 위원과 김진태 위원, 김태흠 위원, 신동우 위원, 전해철 위원, 정성호 위원, 홍익표 위원, 정진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각 규칙안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규칙안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2013년 12월 12일부터 기능직과 계약직이 폐지되고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 임용직군 및 직렬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일반직공무원 내에 새로 포함되는 임기제 공무원과 전문경력관에 관한 세부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행정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등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규칙안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전직시험에 관한 사항과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임용에 관한 특례 등을 정하고, 그 밖에 공무원 구분 체계 변경에 따른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고 행정부의 특례규정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규칙안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직종별 정원을 조정하고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21인의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국가공무원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정원 조정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인력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안에서 10인을 감축하고 2인을 증원하여 총 13인을 증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감축 및 증원된 인력에 관하여 보고드리면,

첫째, 고위직 증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번에 증원하려는 입법심의관 2인을 모두 감축하고,

둘째, 이번에 증원하려는 과장급 입법정보화기획담당관 1인을 감축하는 대신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대영국 의원 외교활동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영국 주재관 1인을 증원하였으며,

셋째, 이번에 증원하려는 인력 중 정보화담당, 의원회관 담당 등 계장급 2인과 관리과 6급 2인 및 인사과 6급 1인 등 5인을 감축하는 동시에 기존 인력 중 촬영관 4급 1인과 기계원 8급 1인 등 2인을 추가로 감축하고,

넷째, 속기직의 승진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의정기록담당 계장급 1인을 추가로 증원하여 2인을 증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소수의견으로 국회사무처 증원과 관련해서는 기능직·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직종개편 부분만으로 한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규칙안 심사 결과입니다.

이 규칙안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기능직 등의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 국회기록보존소의 직무를 확대하며 의회정보심의관을 폐지하면서 국회기록보존소장의 직급을 국장급으로 상향하고 필요한 인력으로 총 5인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심사한 결과 증원 필요성이 낮다고 보이는 기록관리 전문요원 1인을 감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기능직 등의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 비용추계회답업무 강화 등에 필요한 인력으로 총 3인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국가공무원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정원 조정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인력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안의 3인을 모두 감축하여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인력 증원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완영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을 감안하여 2014년 상반기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증원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기능직 등의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 조사회답의 적시성 및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인력으로 총 3인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심사한 결과 증원 필요성이 낮다고 보이는 전산담당 1인을 감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환 윤상현 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참고로 2014년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윤상현 위원과 정성호 위원으로부터 한국의정여성포럼에 대한 국고보조금 1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뉴스통신 서비스 구조개선 1억 2000만 원 증액을 요구하는 서면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2건의 국회규칙 개정안은 그 시행이 2013년 12월 12일로 되어 있으나 이미 그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동 규칙안을 의결할 때 시행일을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과 국회 규칙안 심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은수미 위원 지금 예산안과 인사규칙안에 관한 것이지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좌현 위원 8항까지 하는 겁니까?

○은수미 위원 8항까지지요?

○위원장 최경환 예, 8항까지.

○은수미 위원 8항까지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제가 사무처 직제개편안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직제 조정으로 24인 증원을 요청하셨지요?

○사무총장 정진석 당초에 그랬었습니다.

○은수미 위원 21인에서 24인으로 바뀌어서 수정안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사무총장 정진석 총원 21인을 요청한 것으로 제가……

○은수미 위원 그러면 21인으로 제가 다시 수정을 하고요.

그런데 기존 사무처 입장에 따르면 청소용역 직접고용 시 관리인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내용이 이번 직제개편안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총장 정진석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문제는 민간인 근로자들의 문제이고 직제개편안의 문제는 공무원들의 문제입니다. 성격이 좀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직접고용 했을 때 노무사 같은 경우를 채용은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당장 별도의 직제개편을 통해서 공무원을 늘려 가지고 대비할 그런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러면 관리인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지금 현재 사무처 직제개편안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까?

○사무총장 정진석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러면 민간인 근로자를 직접고용 할 때에는 직제개편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사무총장 정진석 그때에는 민간인 직접고용에 필요한…… 우리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노무사 같은 경우를 별도로 채용해야 될 겁니다.

○은수미 위원 아니, 그러면 204명은 어떤 직제에 편입이 됩니까, 직접고용을 하면?

○**사무총장 정진석** 직접고용을 해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제에 편입되는 게 아닙니다.

○**은수미 위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총장 정진석** 공무원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은수미 위원** 그냥 직접고용이기 때문에 직제 개편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요?

○**사무총장 정진석** 예, 직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직제개편안을 어떻게 논의를 하든 간에 여야가 합의만 하면 204명을 직영화하는 방식으로 그냥 아무 때나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사무총장 정진석** 어떻든 여야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결론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존중해야지만 그 이후에도 예를 들어서 기재부나 고용노동부나 안전행정부라든가 유관 정부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특히 기재부의 경우에는 비목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추후 문제는 남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비목 변경에 대한 기재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사무총장 정진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위탁고용비로 비목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인건비로 변경해야 되는 동의를 정부로부터 받아내야 됩니다.

○**은수미 위원** 그러면 비목 변경 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예산안을 봤는데 예산안 변경이나 증가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무총장 정진석**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청소용역 근로자를 직접고용 했을 경우에 예산의 부담은 저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예산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는 거지요?

○**사무총장 정진석** 예, 지금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러니까 그 204명을 전원 직영화하는 비목 변경만 하면 되고 그것을 저희들이 합의를 하면, 기재부의 동의만 받으면 그날로 비목 변경을 하면 되고, 관리 문제나 이런 것도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사무총장 정진석** (고개를 끄덕임)

○**은수미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년 문제가 하도 문제가 돼서, 그리고 그동안 사무처가 아무런 일도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물론 이게 직접고용이나 아니냐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대학들을 짚어봤더니요, 서울대 67세, 이화여대 70세, 연세대 70세, 경희대 70세, 홍익대 70세, 고려대 70세, 고려대병원 70세, 인덕대 70세 등등, 그리고 지금 서울시는 65세이고 그다음에 프레스센터 같은 경우는 기준은 70세로 정년을 하고 신규자는 65세 등으로 정년이 돼 있더라고요.

이미 청소 부분에 대한 정년은 대체적으로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혹시 정년에 대해서 조사해보신 바 있습니까?

○**사무총장 정진석** 각 정부기관의 경우 무기계약직,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에는 60세 정년 한정 규정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은수미 위원** 아니, 그러면 서울시는 어떻습니까?

○**사무총장 정진석** 서울시만 지금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서울시는 했지 않습니까?

○**사무총장 정진석** 그러나 서울시도 지금 정규직화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정규직화한 겁니다.

○**사무총장 정진석** ‘준공무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은수미 위원** 아니, 정규직이라는 게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공무원 시켜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 하세요? 공무원이 아니라서 직제개편안에 포함이 안 된다면서…… 이게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것조차도 2년간 아무런 조사를 안 하셨다는 겁니까?

○**사무총장 정진석** 지금 서울시의 경우에는 금년에 처음 제도개선을 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은수미 위원** 어쨌든 직접고용으로 65세이고요. 다른 데가 거의 70세, 67세, 만 64세, 수없이 많습니다. 한 번이라도 협의를 해 보셨어요?

○**사무총장 정진석** 실무진에서 협의를 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년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야가 합의를 하고 비록 변경에 대해서 기재부 동의만 받으면 이것은 되는 문제 아닙니까?

○사무총장 정진석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누구를 낙오시키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다만 전원 정규직화될 수가 없다는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어차피 61세부터 65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들은 계약을 하고 싶어도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이 좀 어려울 겁니다. 본인들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본인들도 당연히 정년 규정을 받기 때문에……

○은수미 위원 간담회……

○사무총장 정진석 간담회를 해 보고, 전원이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수미 위원 저희가 정년 문제를 협의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잖아요.

○사무총장 정진석 전원이 원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고령의 근로자들은 사람들이 현상유지가 좋다는 그런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은수미 위원 제가 조금만 더……

아니요, 만 60세로 못 막아 버리면 그렇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노동자, 청소노동자 정년 현황을 저희 의원실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 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왜 협의는 안 하고 이제는 노조 핑계를 댈니까, 노동자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사무총장 정진석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무기계약직은 일반적으로 60세를 정년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수미 위원 일반적으로 60세지요. 그게 강제 규정도 아니고요. 그 이상에 대해서 아무도 막지 않습니다. 60세라 함은 최소 규정입니다. 60세 이상의……

법을 좀…… 사무처에 게시면서 법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무총장 정진석 그런 문제는 추후……

○은수미 위원 무기계약은 60세이고요.

○사무총장 정진석 알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60세 이상의 정년은 아무도 막지 않습니다. 이게 법에 대한 해석입니다.

○사무총장 정진석 지금 그게 청소 용역 근로자

에만……

○위원장 최경환 은수미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사무총장 정진석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인 틀에서 다른 민간인 근로자의 문제와 함께 검토되어야 될 문제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어쨌든 ‘무기계약직은 60세다’라는 것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사과하십시오.

○사무총장 정진석 제가 사과할 발언을 한 적은 없고요. 무기계약직 정년이 60세라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팩트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은수미 위원 그게 최소 규정이라고 그 법안을 통과시킨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무총장 정진석 정년 문제는 나중에 위원님들이 또 추후에…… 우선순위로 거론할 문제가 아니고 추후에 또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실 문제입니다. 위원님들이 별도로 결론 내 주면 그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은수미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자,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사무총장 정진석 이것 엄청난 오류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장 최경환 박민수 위원님!

○박민수 위원 박민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소위에서 문제됐던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회사무처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헌정회 헌정지 발간과 관련해서 대단히…… 작년 가을부터 대선 직전까지 몇 개월 동안 발간된 부분하고 그리고 올 가을에 발간된 부분이 대단히 편향되어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헌정지 발간 편집위원회도 대부분 예전에 민정당 출신들이 대부분 다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어 있는데, 그때 전액 삭감 의견을 우리 야당 위원들이 냈는데 그때 약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헌정지 발간에 대한 객관적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해 달라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한번 간략하게, 총장님 준비된 게 있으면……

○사무총장 정진석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헌정지 문제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헌정회는 독립 법인으로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지만 위원님들 지적에 일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우려와 지적을 헌정회에 전달을 할 것이고 아울러 헌정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가 더욱더 주무관청으로 관리감독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민수 위원 그런데 헌정회로부터 그 헌정회 편집위원이라든지 헌정지 편집위원이라든지 헌정지 발간에 관해서 뭐 새로운 다른 방법을 취하겠다는 그 내용은 따로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까?

○사무총장 정진석 좀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민수 위원 그러면 이것 예결위에서 다시 문제 제기해서 반드시 삭감하겠습니다, 이것 전체.

○사무총장 정진석 예, 물론……

○박민수 위원 왜 분명히 그때 소위에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다음 회의 때까지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전혀 그것을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사무총장 정진석 지금 헌정회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헌정회에 뜻을 전했고 헌정회의 답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박민수 위원 그 현황은 알고 계시지요? 어떤 내용으로 집중적으로……

○사무총장 정진석 예, 그렇습니다.

○박민수 위원 보수적으로 몇 개월 동안 써왔는지 총장님 아실 겁니다.

○사무총장 정진석 예.

○박민수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또 지금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그리고 대통령경호실 관련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나온 게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어디에, 개략적으로라도 어디에 어느 금액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에 관해서 결산도 되지도 않고 그리고 예산안에 대해서도 전혀 그 내역이 나오지 않아서 이번에는 특히 우리 운영위원회에 있는 여당 위원님들 세 분 정도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서면질의를 통해서.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환 예.

○박민수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여당·야당 공히 여섯 분, 일곱 분 정도 동시에 지적한 내용인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그리고 대통령경

호실의 특수활동비가 거액인데 그게 비목이라든지 그 금액이라든지 개략적인 내용도 없이 결산도 못 하고 예산에도 통제도 못 한다는 말이 동시에 문제 제기가 됐고, 그리고 이것은 지금은 우리 소위에서는 일단 부대의견으로 ‘개략적인 기능별 규모라도 제시하는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고, 이 운영위원회의 한계가 뭐냐 하면 1년만 있다가 대부분 다 바뀌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한 번 환기를 제가요청을 드리고, 위원장님도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정무수석실을 비롯해서 청와대 관계자 나와 계시니까 이 말을 충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박준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

○부좌현 위원 내가 나중에 할게요.

○위원장 최경환 예.

○김현 위원 민주당의 김현입니다.

앞서 특수활동비 얘기를 하셨는데요. 홍보수석께서 연일 화제의 주인공이신데요.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해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렇지요, 홍보수석님? 홍보수석님 안 계시나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박준우 홍보수석은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김현 위원 불출석사유서 없었는데요. 불출석사유서 낸 분은 비서실장, 안보실장, 도서관장밖에 없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홍보수석 불출석사유서 없었는데요.

○위원장 최경환 이렇습니다, 김현 위원님.

○김현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최경환 이것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 부분은, 통상 우리가 예산안 의결할 때는 기관장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내고 대행자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현 위원 그러면 홍보수석……

○위원장 최경환 홍보수석이 출석 대상이 아님

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대행자는 누구시지요?

○**위원장 최경환** 정무수석이 대행자입니다.

○**김현 위원** 예, 정무수석님, 이것 그러면 홍보수석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채동욱 검찰총장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은 뭐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박준우**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김현 위원**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특수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지요. 아마 이정현 홍보수석도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쓰시는 분인데요, 정무수석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하지도 않은 발언…… 그 문자 메시지와 통신을 하지도 않은 사람을 찍어서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모르십니까, 정무수석님은?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박준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홍보수석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청와대가 없습니까?

왜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까지 하고요, 이정현 홍보수석의 발언 하나 때문에, 이렇게 공무원이 피해를 보는데 청와대가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어물쩍 넘기려 드니까? 그리고 예산 그냥 집행해 달라 이런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박준우** 그 부분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김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아니라 안행부에서 일차 감찰수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보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박준우** 예.

○**김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요?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박준우** 그 부분도 포함을 해서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홍보수석에 대해서 조치를 건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박준우**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재판 결과는 아니지요.

그러면 검찰 수사 결과만 보고 조치를 하실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박준우**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그다음에 정무수석님, 야당 국회의원이 네 차례에 걸쳐서 정무수석한테 전화했는데 전화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뭐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박준우** 응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김현 위원** 응하지 않았습니까. 네 차례에 걸쳐서 전화를 했는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비서실장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질의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지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박준우** 제가 쓰고 있는 전화번호에 입력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김현 위원** 입력이 안 되면 전화 안 받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박준우** 워낙 전화가 많이 오고 또 회의 참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김현 위원** ‘강기정 의원입니다’라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분명하게. 그러면 강기정 의원이라고 문자를 남기면 모르는 전화번호면 안 받습니까?

강기정 의원이 대한민국에 둘이 있습니까, 셋이 있습니까? 정무수석이라는 분이 정무에는 관심이 없고…… 여야 의원을 공히 만나서 조정·조율하고 소통하는 자리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박준우** 열심히 만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강기정 의원입니다. 전화 바랍니다’ 네 차례에 걸쳐서 문자 남겼는데 모르는 전화번호라서 받지 않았다, 말이 됩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박준우** 그런 문자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현 위원** ‘강기정 의원입니다’라고 전화 안 받았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박준우** 전화 못 받았습니까.

○**김현 위원**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에 대해서 입력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정무수석님 전화번호에는? 그러면서 무슨 정무수석입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박준우** 다 입력이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김현 위원** 야당 위원 127명 입력 안 돼 있습

니까? 지금 그러면서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활동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여야 정무수석께서 야당 국회의원 전화번호를 모릅니까? 정무가 됩니까, 그래서?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박준우** 전화번호가 다 입력돼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김현 위원** 그럼 앞으로도……

그럼 몇 명 입력되어 있습니까?

정무비서관 계십니까, 뒤에 배석하고 있습니까? 행정관, 혹시 와 있습니까?

업무용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지금 하는 업무용 전화번호에 국회의원 그것 입력 안 해 가지고 전화번호 몰라서 전화를 안 받았다, 네 차례에 걸쳐서요, 동일한 전화번호가 네 번이나 왔을 텐데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박준우**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시간 중에 대부분 회의 참석 또는 면담하고 있던 중이고요.

○**김진태 위원** 그런 것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위원장님, 질의하는데 방해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최경환** 김 위원!

○**김진태 위원** ‘몇 명 저장되어 있냐’ 그것까지 물어도 돼요?

○**김현 위원** 저 시간 안 됐거든요, 위원님!

○**부좌현 위원** 발언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최경환** 김진태 위원, 들어 보세요.

상대방이 질의할 때는 경청해 주세요.

○**김현 위원** 두 분이나 끼어들어 가지고 이렇게 방해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최경환** 말씀하세요. 계속하세요.

○**이우현 위원** 질문의 요지를 좀 잘 하세요.

○**김현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환** 계속하세요. 무슨 또 정회야?

○**김현 위원** 아니, 김진태 위원님하고 이우현 위원님하고 이렇게 사이에 끼어들고, 어떻게 질의하는데 이렇게 합니까? 무슨 대한민국국회가 이렇게 됩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됩니까?

○**위원장 최경환** 주의를 쫓으세요. 빨리 하세요. 질의하세요.

○**김진태 위원** 하세요.

○**이우현 위원** 아니, 예산 다루는 거지 지금 여

기서 국정감사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위원장 최경환** 자, 조용, 조용하시고 빨리 질문하세요.

(장내 소란)

○**은수미 위원** 질의하는데 왜 끼세요?

○**김현 위원** 제가 질의하는데 왜 간섭하십니까?

○**이우현 위원** 서로 예의껏 해야지, 서로 예의껏.

○**부좌현 위원** 추궁하는데 왜 그래요?

○**이우현 위원** 추궁하는 게 아니잖아.

○**부좌현 위원** 야당 의원 전화번호 없으면 돼요?

○**은수미 위원** 그것을 왜 중간에 끼어서 말씀하세요?

○**이우현 위원** 조금 이따 하든지 말이야 혼자만 지금……

○**김현 위원** 지금까지 질의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지나는 중이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고 가지고, 제 질의 시간이었습니다. 5분 안에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조용하세요.

○**김현 위원** 이게 뭐하는 겁니까?

사과 받아 주세요.

사과하세요, 두 분 다!

김진태 위원님하고 이우현 위원님 사과 받아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환** 김현 위원님도 의사진행 방해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됐고, 각자……

○**김현 위원** 제가 지금 질의 시간이었습니다,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신상발언할 것 있습니다.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 최경환** 김현 위원도 다른 분 하실 때 다 했으니까 좀 서로 양해하세요.

○**김현 위원** 아니, 제가 5분 안에 하는데 둘이 끼어든 것에 대해서 사과 받아 주세요!

○**위원장 최경환** 그건 잘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됐고……

○**김현 위원** 누가 잘못했다고 얘기했습니까?

○**김태흠 위원** 24초 남았으니까요……

○**위원장 최경환** 1분 동안 더……

○**김현 위원** 제가 질의할 때도 또 끼어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것까지, 제가 의견 내지 않고 그냥 진행했습니다.

○**김태흠 위원** 1분, 1분……

○위원장 최경환 1분 드릴게. 1분 동안 더 질문 하세요.

○김현 위원 김태흠 위원님이 뭘데 시간을 주십니까, 지금?

○김태흠 위원 주잖아요.

○김현 위원 원내대변인이면 원내대변인이지 지금 원내 간사입니까, 뭘니까?

○위원장 최경환 김현 위원님!

○김현 위원 빨리 사과 받아 주세요, 두 분에 대해서!

○위원장 최경환 김태흠 위원님, 한 1분 동안 더 추가……

○김현 위원 아니요, 시간 문제와 사과 받아 주세요. 두 분에 대해서 사과 받아 주세요.

○위원장 최경환 참 나……

○김현 위원 빨리 받아 주세요. 그리고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저.

○위원장 최경환 다음에 질의하실 분들……

○김현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러면.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지금 의사진행발언 제일 많은 분이 김현 위원이세요.

○김현 위원 저 1분밖에 안 했습니다, 오늘요.

○위원장 최경환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부좌현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할 수는 없지요.

○위원장 최경환 질의하세요. 질의하시고……

○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은수미 위원 왜 이러십니까, 정말?

○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입니다.

의사진행도 못 하게 합니까, 위원장님은? 신상발언 신청과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부좌현 위원님 하고 하세요.

부좌현 위원님 먼저 하시고……

○부좌현 위원 아니, 잠깐 유감 표명을 하세요. 발언 중간에 끼어서 질의 시간 내에 제가 들어도……

○김현 위원 그것 하지 말자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아니, 그것은 제가 주의를 줬지 않습니까?

○김현 위원 주의를 준 게 아니라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부좌현 위원 저 의사진행 처음 하니까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 최경환 예.

○부좌현 위원 작년에 운영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그때하고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다릅니다.

아니, 우선 여당 위원님들께서 우리 김현 위원님 발언하시는 중에 시간 내에, 제가 들어도 사실은 정무수석께서 여야 간에 정치권하고 교류하고 소통하는 게 기본 임무인데, 더구나 저 같은 초선 의원도 아니고 저희 당의 3선 의원님의 전화번호가 입력 안 돼 있다, 이것은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중간에 여당 위원들께서 문제 있다는 식의 발언을, 간섭하는 것은 제가 봐도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간 유감 표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흠 위원 잠깐만……

지금 김진태 위원이나 아니면, 두 분이 이렇게 한 부분, 그런데 지금 발언 중에 끼어들어 가지고 더 심한 논쟁이 오고 가고 했어도 여지까지 유감 표명하고 정회하자는 얘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좌현 위원 그랬어요? 그것 몰랐습니다, 제가. 그것은 잘못됐네요.

○김태흠 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다 못 하셨다고 그러면 못 하신 부분 말씀하시게 하고 원만하게 가야지요. 이런 부분이 한 번도 없었어요.

○김현 위원 한 번도…… 있었습니다.

○김태흠 위원 예, 왜냐하면……

○김현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 신청입니다.

있었습니다, 김태흠 위원님. 직전에도 지난번에 청소노동자 문제 관련해 가지고요, 정회 여기에서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정회됐거든요.

○김태흠 위원 정회한……

○김현 위원 잠깐만 들으세요!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제가. 1 대 1 토론회 아니에요.

○김태흠 위원 주지도 않았어요, 위원장이!

○김현 위원 의사진행 하라고 그랬어요. 마이크 켜졌으니까 한 겁니다.

○위원장 최경환 김태흠 위원님 가만 계셔 보세요.

자, 하세요.

○김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건 뭐냐 하면 지난번에 원내대표께서 이것은, 이 운영위원회는 정쟁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당 위원이 얘기할 때, 야당 위원이…… 대부분이 거의 다 부대표이고 당을 대표하는 지도부이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상대 위원이 얘기할 때는 끼어들지 말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된다고 위원장님이 저와 은수미 위원을 따로 불러서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때 홍익표 위원도 불러서.

오늘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하면 그런 적을 만들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됩니다.

저는 이것보다도 더 한 얘기,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5분 안에 진행 중인데 큰 소리를 치면서 질문에 대해서 또한 답변에 대해서 방해할 합니까?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겁니다, 명백히. 국회법에 훼손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감 표시든 사과든 저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제가……

○위원장 최경환 예.

○김진태 위원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이 운영위에서 그동안 1년 동안 여러 차례 위원회나 또 국정감사나 여러 가지 법안 심의나 해 오면서 이런 비슷한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동료 위원인 김태흠 위원이 지난번에 국회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야당 위원들이 너무 여러 사람이 자리에 앉은 채 이야기를 해서 발언을 해도 들리지 않음 정도였습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언제부터 또 우리가 이렇게 여당 위원이 그냥 한마디 했다 그래 가지고 그걸 끝까지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 요새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팩트, 남이 하면 선동’,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현 위원 얘기하신 것 좋은데 지금 우리 예산 심의, 지금 법률 심사해야 될 것이 이렇게 밀려 있고 지금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우리가 모여 앉아서 하는데 거기에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더군다나 프라이버시에 관한…… 휴대폰에 도대체 누가 저장이 돼 있냐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주의를 준 것이므로 의사진행발언 할 시간을 방해 받아서 그게 그렇게 억울하면 우리 위원장께 더 허락을 받아서 그 방해 받은 부분 더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 위원 주의를 줘요? 주의를 줘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우현 위원 제가 좀 할게요.

○김현 위원 아니, 이건 점입가경도 유분수지요.

○위원장 최경환 자, 그래서……

○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자, 그래서……

○김현 위원 주의를 준다고요! 동료 위원한테 주의를 줘니까?

○위원장 최경환 김 위원님, 잠깐 계셔 보세요.

○김현 위원 대가를 치르겠다고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동료 위원한테 주의를 줘니까!

○김진태 위원 이것 보세요!

○위원장 최경환 김현 위원님!

○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입니다.

○이우현 위원 저기 저……

○위원장 최경환 자, 두 분 다 조용히 좀 해 보세요. 이우현 위원도 잠깐 계셔 보시고.

우리가,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우리 운영위원회는 원내대표단이 모여서 하는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이 발언할 때 이렇게 끼어든다든지 하는 것 자체 해 달라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해 왔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들이 빈발해서 저도 솔직히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들끼리 서로 이 문제 가지고 감정 상하는 말이 오고가고 또 하면 서로 그게 또 에스컬레이트 되고 하니까, 제가 아까 분명하게 동료 위원이 발언할 때 끼어드는 것은 주의를 줬습니다.

줬고, 이것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서로가 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동료 위원이 발언하는데 중간에 고함을 지른다든지 끼어든다든지 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김현 위원 아니, 저한테 주의를 줬다잖습니까?

○위원장 최경환 이것 서로 말이 오고가면 또 저거하니깐 그런 정도 하시고, 부좌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부좌현 위원 총장님!

○사무총장 정진석 예.

○부좌현 위원 작년에 상임위 활동이나 국감 관련해서 저도 비정규직이나 이런 문제에 관해서 많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청소노동자들의 문제와 직접 연관이 없는지 모르지만 정신은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지금 우리 노사관계의 전체적 맥락과 이게 닿아 있는 문제인지 제가 사실은…… 그런 유사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수준의 문제가 다뤄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구체적으로 청소노동자들의 어떤 근로조건이, 예컨대 이해당사자들끼리 잘 협의가 안 됐든지 또는 불이익되는 여러 가지, 오히려 근로조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사안 때문에 이 문제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그때도 비정규직 문제를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국가의 기본 정책방향도 그렇고……

○사무총장 정진석 그렇습니다, 예.

○부좌현 위원 우리 박근혜 대통령조차 사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공약까지 한 마당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정치권이 앞장서서 그 정상화에 나서야 된다고, 그것 좀 적극 나서 달라 이런 주문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화답을 하셨거든요.

○사무총장 정진석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부좌현 위원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와서 들어보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꼬여 있고 상당히 또 사무처 입장에서 별로 노력하지 않는 듯한 이런 질책성 질의까지 있어서 현재 현실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가 도대체 뭔지 좀 궁금해서 제가……

○사무총장 정진석 일단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에 대한 노력은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 국회사무처도 다른 어떤 공공기관 정부기관보다 선제적으로 선제적으로 비정규직화의 정규직화 작업을 서둘러 왔고 일정 부분 성과를 거양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말씀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역시 선거 캠페인을 통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얘기했습니다만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하겠다는 그런 언

급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부좌현 위원 그렇게 디테일까지 그런 부분이 안 됐어요?

○사무총장 정진석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맥락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무슨 어느…… 직접고용이 좋고 간접고용이 나쁘고, 이게 선악의 문제나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청소 용역 근로자들의……

○부좌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아까……

○사무총장 정진석 신분 고용안정 문제라든가 또 업무의 효율성 문제라든가 전반적인 걸 고려해야 되고 이걸 직접고용으로 가기까지는 어떤 선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부좌현 위원 알겠습니다.

○사무총장 정진석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좌현 위원 총장님!

○사무총장 정진석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저희 입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좌현 위원 그러니까 그 입장은 아까 모두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사무총장 정진석 예.

○부좌현 위원 그러나 구체적으로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구체적으로 생각 안 했을 수가 있으니까, 다만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심각한 양극화 문제라든가 또 우리 어려운 근로조건에 있는 비정규직 형태의 근로형태를 정상화하고……

○사무총장 정진석 물론입니다.

○부좌현 위원 질 높게 가져간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 없지 않습니까?

○사무총장 정진석 동의하고 있고요. 저희 국회사무처가 다른 어느 정부기관보다도 선제적으로 선제적으로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좌현 위원 아무쪼록 하여튼 그런 정책에는 다 동의가 되시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여야 간에 좀 빠른 시간 내에 그 방안 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사무처에서 적극…… 아까 표현이 좀 약간 또 애매하시더라고. ‘존중은 하겠지만……’ 하고 또 조금 빠져나가는 듯한 뉘앙스가 보이는데……

○**사무총장 정진석** 당연히 여야 위원님들께서 결론을 도출해 주시면 존중하지 않겠습니까?

○**부좌현 위원** 그렇게 합의가 되면 적극 동조해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사무총장 정진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환** 신동우 위원님!

○**신동우 위원** 사무총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무총장 정진석** 예.

○**신동우 위원** 오늘 야당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걱정을 하신 건 청소원들에 대한 신분 문제거든요.

○**사무총장 정진석** 그렇습니다.

○**신동우 위원** 저는 이 문제의 논의의 프레임이 잘못 잡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직접고용을 하면 이분들이 정규직이 되고 복지가 올라가는 것이고 아니면, 또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근로자들의 신분이나 복지에 전혀 관심이 없고 이렇게 프레임이 잡힌 걸 보고……

○**사무총장 정진석**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신동우 위원** 예, 저는 그렇게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총장 정진석** 오히려 직접고용에 대해서 복지가 완전히, 복지가 거기에 비례…… 직접고용을 통해서 복지가 성취된다는 그런 담보는 없는 겁니다.

○**신동우 위원** 오늘 총장님 답변을 보니까 이제 질서를 잡으신 것 같아요.

아마 이 방에 계신 분 중에서 청소 업무를 직접 책임져 본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해 봤습니다.

○**사무총장 정진석** 예, 위원님 해 보셨지요.

○**신동우 위원** 저는 서울시 전체의 청소 업무도 환경관리실장 때 책임을 져 봤고 구청장 때는 인구 50만의 청소를 직접 해 봤어요. 과거에 우리가 직접고용도 해 봤고 또 한 십수 년 전 이후부터는 전부 지금 방법을 바꿨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근무하던 모 구청의 50만 인구의 청소 업무는 3개 회사가 맡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용이 된 청소원들은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사무총장 정진석** 일반적으로 위탁고용의 근로자들은 비정규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지요.

○**신동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국회의 청소원

근로자들이 그 위탁계약이 바뀔 경우에 고용이 승계가 안 된 경우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사무총장 정진석** 없습니다.

○**신동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총장 정진석** 100% 승계되고 있습니다.

○**신동우 위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의 고용의 안정을 추구해 드리고 그다음에 보수라든가 이런 대우가 적절한가, 노사관계가 적절한가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챙겨 보셔야 돼요.

○**사무총장 정진석** 예.

○**신동우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을 두는가 하면, 정부 정책에 의해서, IMF 직후에 당시 김대중 정부에 의해서 우리 정부를 포함한 부분까지 효율성과 또는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웃소싱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사무총장 정진석** 그렇습니다.

○**신동우 위원** 그래서 서울시를 비롯해서 모든 지방조직이 전부 바꾼 겁니다, 이렇게. 십수 년 걸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총장 정진석** 그렇습니다.

○**신동우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아까 지적하셨듯이 단순히 우리 국회의 문제라면 이것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사무총장 정진석** 그렇습니다.

○**신동우 위원** 그런데 적어도 국정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 국정 운영의 틀을 어디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상징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전에 박 의장님께서 어떻게 어떤 연유로 해서 약속을 하셨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차체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좀 정리를 해서 방향을 제시해야 됩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이번에 이것을 다시 직영 체제로 가면 여기는, 국회는 불과 200명이지만 말이지요, 서울시 전체는 수만 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다 하면 이것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이 업무를, 청소 업무를 어떤 시스템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시그널을 보내는 업무라는 얘기지요.

○**사무총장 정진석** 바로 그 점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신동우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전문적인 시각을 갖고 전문적인 검토를 좀 하셔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조금 제가, 제 지식과 달라서 그런데 만약에 직영으로 갈 경우에는 고용주가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사무총장이 되는 겁니까?

○사무총장 정진석 예, 그렇습니다.

○신동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신분이 뭐가 되지요?

○사무총장 정진석 지금 무기계약직을……

○신동우 위원 아니요,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사무총장 정진석 공무원은 아닙니다.

○신동우 위원 공무원이 아닌 겁니까?

○사무총장 정진석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신동우 위원 그러면 TO 조정은 안 해도 되는 얘기지요?

○사무총장 정진석 그렇습니다.

○신동우 위원 그렇습니까?

○사무총장 정진석 예.

○신동우 위원 그것은 제가 오늘 새로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저는 야당 위원님들의 저런 우리 직원들에 대한 애정과 도와주려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하고 이 문제를……

○사무총장 정진석 다릅니다.

○신동우 위원 좀 구별해서 국정 운영의 틀을 다시 어떻게 짤 것이냐 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총장님께서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무총장 정진석 명심하겠습니다.

○신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추가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은수미 위원!

○은수미 위원 지금 사무총장님께서 조금 전에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 맞습니다. 선악의 문제 아닙니다. 저는 사실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9일 날 18대국회 박희태 의장께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회 청소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약속을 하셨어요. 국회의장께서 그냥 이런 정규직 전환을 약속을 하고 사무처에서 뒷받침을 안 했으면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속기록을 보시면 6월 22일 날 권오을 사무총장께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용역계약 기간이 끝나면 청소근로자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했다’, 답변

을 두 차례에 걸쳐서 하셨어요. 이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지요?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안 된 이유는 용역계약 기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을 선악의 문제로 호도하지 마십시오.

6월 22일자 속기록을 다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까지가 다 동의가 돼서 8월 26일 날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국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직제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2011년에 일어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권오을 사무총장이 사무처를 대표해서 했던 약속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직제개정안을 통과시켰었던 2011년의 일련의 사태 이것을 지금 뒤집으시겠다는 겁니까?

○사무총장 정진석 뒤집게 될는지 이행하게 될지의 결론은 아직 유보 상태기 때문에……

○은수미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그 이유가 여야 합의가 안 돼서입니까, 아니면 국회사무처는 여야 합의와 무관하게…… 이걸 그렇게 하겠노라고 한 약속 아닙니까? 국회사무처는 1, 2년 전에 이렇게 속기록까지 다 되어 있는 것을 무책임하게 뒤집습니까? 저는 사무총장님께 여쭙 보는 겁니다.

○사무총장 정진석 박희태 의장님과 권오을 전 사무총장께서 그와 같은 취지의 언급을 하셨다는 말씀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좀 뒤늦게 들었습니다. 제가 업무 인수인계 받을 때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고요 윤원중 전임 총장으로부터도 유감스럽게도 그 부분에 대한 업무 인계인수를 받지 못했는데 어쨌든 그거와는 별개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문제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합의에 도달을 해서 직접고용이 될는지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현재의 간접고용 형태로 이어질지는 아직은 속단하기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러니까 업무 인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나는 모른다’라는 겁니까?

○사무총장 정진석 아닙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아무튼 국회사무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

로서 12월 31일 용역 업체와의 고용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의 결정은 전적으로 저의 결정과 또 새로 등원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결정할 문제인 것이지 전임 국회 의견이 구속력을 갖는다거나 그러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은수미 위원 아니,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직제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때 국회 청소 용역을 제외한 다른 민간근로자를 전환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때 용역이 빠진 게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권오을 사무총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이분들도 해당이 되는데 용역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직접고용을 하겠노라’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십시오.

○사무총장 정진석 위원님의 충정을 저는 이해하겠는데요……

○은수미 위원 아니, 끊임없이 형평성 문제가 나오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400명 중에 나머지는 그렇게 해서 직제개정안 등 다 됐어요. 그런데 대상인 사람들은 용역 계약기간이 안 끝나서 못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2년간 다른 노동자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시 운영위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국회 청소 용역을 제외한 다른 민간근로자를 전환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사무처와 운영위가 합의하고 직제개정안까지 통과를 시켰다면 그 이후 인수인계를 받은 사무처가 당연히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노라라는 답변을 하셔야지 이것을 다시……

○사무총장 정진석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은수미 위원 아니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악의 문제라든가 효율성의 문제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문제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도 그런 문제가 거론이 안 됐습니까? 지금 우리는 좀 더 얘기를 나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그런 문제가 다 검토가 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합의해서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19대 국회가 18대 국회보다 한 발 더 나가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진전

된 내용을 가져오셔야 되지 그걸 다시 선악의 문제라든가 또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무총장 정진석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중에 과거 권오을 총장 시절에 400여 명의 근로자들을 정규직화하는 직제개정을 약속을 했다, 거론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용역 민간근로자들의 문제와 직제개정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직제개정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에 관한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떤 기록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게 얼른 이해가 안 갑니다.

○은수미 위원 그때 상식이 어떤 거였나면요 계약직공무원까지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400여명 중에. 그래서 논의가 한꺼번에 된 거예요. 그때 속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총장 정진석 제가 한번 속기록을 찾아보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래서 별정직으로 있던 계약직 공무원을 그 당시에 무기계약,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변경시킨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근로자를 다른 방식으로 변경시킨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무총장 정진석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래서 이것이 통합적으로 된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구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게 정년 문제에 대해서, 지금 부산대 같은 경우가 직접고용으로 72세 정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례들이 많지는 않으나 이미 시작되었고 사실 2011년에는 거의 없었는데 국회에서부터 시작하겠노라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여야 합의를 할 텐데 그 기간 동안 사무총장님은 반드시 이 문제를 가지고 노조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4월이었지요, 정년 연장입니다. 60세까지 정년을 할 때 저희들이 분명히 그때 취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최저선이구요 60세는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상은 노사 합의로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경환 은수미 위원, 마무리해 주세요.

○은수미 위원 그것까지 염두를 두시고 다른 기관들도 이렇게 70세 넘어서까지 정년이 있는 기

관들도 있다는 것도, 이것 직접고용입니다, 그것도 염두를 두시고 노조하고 협의를 해 주십시오. 그걸 사무처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들이 여야 합의를 하면 곧바로 되는 것 아닙니까?

부탁드립니다.

○사무총장 정진석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대통령경호실 소관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또 국회 소관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 중에 윤상현 위원과 정성호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기타사항 및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그 시행일과 관련된 경과조치를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안은 그 시행일과 관련된 경과조치를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성호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잠깐만, 이것만 마무리하고요.

오늘 통과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정성호 위원 지금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할 뿐만 아니라 일단 운영위의 가장 현안인 국회 청소노동자의 직접고용과 고용안정에 관련된 이 현안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을 해 갖고요 즉시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위원장님 그것 좀 약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최경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로 명칭 변경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국회 운영제도와 관련된 그런 안건도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토론해 주신 청소용역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아까 그 기간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2월 말 얘기도 나왔고 또 12월 말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솔직히 지금 12월 말 해 봐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절충안으로 해서 한 1월 말까지 이 문제를 매듭을 짓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선적인 과제로 논의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경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등의 의결에 대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사무총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국회규칙안 의결에 대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 정진석** 존경하는 최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규칙 제·개정안을 각별한 관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고견들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집행과 인사 운영 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가인권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 존경하는 최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1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보여 주신 우리 위원회에 대한 기대와 관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의결해 주신 위원회 예산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 인권 감수성 제고 및 인권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결해 주신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통령비서실장을 대신하여 정무수석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박준우** 존경하는 최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국정 심의로 바쁘신 중에서도 오늘 2014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직원들은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이룰

수 있도록 긴장을 풀지 않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통령경호실 차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실차장 박종준** 존경하는 최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세출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대통령경호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깊이 명심하여 업무에 반영하겠으며 의결해 주신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경호업무가 한층 더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경호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국가원수의 완벽한 신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환** 수고하셨습니다.

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직제 의결과 관련한 소속기관장 인사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기관장님들께서는 오늘 의결된 예산안이 국민의 귀중한 세금인 만큼 국회가 심사한 취지를 유념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상정하는 순서입니다.

소속기관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하려 했던 의사일정 제36항과 제37항, 제53항은 오늘은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전병헌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예.

○전병헌 위원 국회사무처 청소노동자 직접고용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사무총장이 ‘그동안 별탈이 없었다’ 또 ‘준비가 덜 되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고 성의 없는 답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 운영위원회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문제와 관련해서 1월 말까지는 국회사무처가 우리 여야 위원들과 함께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또 청소노동자들의 직접적인 그런 사연과 요구를 들어 가면서 1월 말까지는 확실하게 결론을 내서 진전되고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 발의)(변재일 · 양승조 · 박수현 · 강동원 · 이상민 · 이석현 · 부좌현 · 민홍철 · 이찬열 · 김영주 · 노웅래 의원 발의)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 발의)(인재근 · 강동원 · 김민기 · 김상희 · 김성곤 · 김승남 · 문병호 · 민병두 · 박홍근 · 배기운 · 부좌현 · 신경민 · 심재권 · 오병윤 · 우상호 · 유기홍 · 유승희 · 유은혜 · 유인태 · 이인영 · 이춘석 · 이학영 · 장하나 · 전순옥 · 진성준 · 추미애 · 한정애 · 홍의락 · 홍종학 의원 발의)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 의원 대표 발의)(이군현 · 서상기 · 김세연 · 박인숙 · 신의진 · 이운룡 · 이한구 · 민병주 · 김한표 · 이재오 · 김용태 · 유일호 · 김종훈 의원 발의)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 발의)(김경협 · 김민기 · 김상희 · 김춘진 · 박주선 · 변재일 · 심재권 · 장하나 · 한명숙 · 한정애 의원 발의)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 발의)(이목희 · 심상정 · 인재근 · 유승희 · 홍영표 · 김경협 · 강창일 · 홍의락 · 이원욱 · 임수경 · 김성주 · 심재권 의원 발의)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 발의)(진선미 · 최민희 · 서기호 · 장하나 · 백재현 · 박남춘 · 조정식 · 유성엽 · 추미애 · 金永柱 · 이낙연 · 민홍철 · 한정애 · 김태원 · 김선동 · 윤후덕 · 박완주 · 김관영 · 김광진 ·

강동원 · 심재권 의원 발의)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 발의)(박기춘 · 김민기 · 최원식 · 부좌현 · 변재일 · 민홍철 · 민병두 · 정성호 · 유대운 · 장병완 · 윤관석 · 한정애 · 조원진 · 김성태 · 김영록 · 이언주 · 강석호 · 이이재 · 이윤석 · 정갑윤 의원 발의)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황주홍 · 조경태 · 김영록 · 이종걸 · 김춘진 · 이원욱 · 김태호 · 우윤근 · 주영순 · 안규백 · 최재성 · 문병호 의원 발의)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 발의)(주승용 · 이윤석 · 노영민 · 최규성 · 강창일 · 배기운 · 박수현 · 김광진 · 이춘석 · 이미경 · 김영환 의원 발의)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 발의)(안민석 · 배재정 · 양승조 · 백재현 · 최동익 · 박주선 · 강기정 · 김우남 · 조정식 · 박기춘 · 박홍근 의원 발의)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 발의)(이노근 · 이완영 · 신동우 · 이명수 · 정희수 · 하태경 · 강은희 · 황진하 · 강길부 · 안중범 의원 발의)(의안번호 6158)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 발의)(김재원 · 홍문표 · 송광호 · 이장우 · 정우택 · 윤명희 · 김태흠 · 권성동 · 문정림 · 경대수 · 최봉홍 의원 발의)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 발의)(김성곤 · 이낙연 · 이미경 · 배기운 · 전순옥 · 박수현 · 정진후 · 김춘진 · 서영교 · 안규백 · 이상직 · 유인태 · 홍종학 · 윤관석 · 원혜영 · 박민수 · 백군기 · 주승용 의원 발의)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 발의)(강기운 · 김기선 · 김상민 · 김성찬 · 김태원 · 문정림 · 박민수 · 이만우 · 조명철 · 한선교 의원 발의)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 발의)(권성동 · 김성태 · 강기운 · 김한표 · 노철래 · 이강후 · 김기선 · 이이재 · 유재중 · 정문헌 · 김재경 · 최봉홍 · 김을동 의원 발의)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 발의)(정희수 · 정문헌 · 이만우 · 김성찬 · 이명수 · 조명철 · 김무성 · 이한성 · 윤명희 · 김중태 · 정우택 의원 발의)(의안번호 6697)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의원 대표

- 발의)(이한구·신의진·이한성·김종태·정희수·유일호·이만우·김광림·박민식·정갑윤·전하진 의원 발의)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 발의)(이언주·김기준·황주홍·정호준·부좌현·전정희·전순옥·이윤석·서용교·노웅래·오제세·김동철·최원식·문병호·민병두 의원 발의)(의안번호 6811)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 발의)(이언주·윤호중·전순옥·박완주·이낙연·최동익·이종걸·송호창·민병두·장하나 의원 발의)(의안번호 6818)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 발의)(문정림·이자스민·권성동·이만우·안홍준·강기윤·조명철·이명수·황주홍·이낙연·이인제·류지영·유기준·김현숙·김진태·김한표·이현승·김성주 의원 발의)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일 의원 대표 발의)(이상일·유승우·정문헌·이한성·김세연·조명철·박인숙·문정림·최봉홍·남경필 의원 발의)
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 발의)(윤영석·이노근·이채익·조원진·정의화·안홍준·이한성·김한표·정우택·현영희 의원 발의)
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 발의)(이현승·문정림·윤상현·함진규·민병두·이명수·이우현·김한표·류지영·홍지만·이채익·이종진 의원 발의)
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 발의)(정희수·손인춘·최봉홍·주영순·김성찬·권은희·심학봉·김종태·김상훈·김태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7400)
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 발의)(심재철·김세연·정우택·이노근·이한성·김종태·한기호·정문헌·김태원·김한표·이장우·이운룡·진영·여상규·김장실 의원 발의)
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 발의)(김우남·윤명희·한명숙·이낙연·조정식·김춘진·김종태·김영록·장하나·부좌현 의원 발의)
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 발의)(강은희·이만우·안종범·김세연·이진복·김종태·정갑윤·김상훈·서상기·이에리사 의원 발의)
3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 발의)(이원욱·배재정·부좌현·배기운·홍의락·심재권·문병호·전순옥·신경민·김재윤·장하나·한명숙·노영민·전정희 의원 발의)
3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 발의)(박완주·양승조·김제남·박수현·김성주·김경협·전순옥·이인영·최동익·최규성·이목희·부좌현·인재근 의원 발의)
4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 발의)(이춘석·김광진·김윤덕·박민수·박영선·박지원·서영교·오영식·우윤근·유은혜·이학영·주승용·최원식 의원 발의)
4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 발의)(김관영·문희상·김영환·이낙연·전정희·김광진·한정애·정성호·조정식·주승용 의원 발의)
4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 발의)(민병두·김우남·김관영·유성엽·박범계·박완주·배기운·진성준·이언주·서영교·윤후덕 의원 발의)
4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 발의)(박영선·김민기·김윤덕·김재윤·박남춘·박범계·박홍근·신경민·안민석·유은혜·유인태·이춘석·전해철·진선미·진성준·추미애 의원 발의)
4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 발의)(문정림·이자스민·권성동·이만우·안홍준·강기윤·조명철·이명수·황주홍·이낙연·이인제·류지영·유기준·김현숙·김진태·김한표·이현승·김성주 의원 발의)
4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 발의)(진선미·진성준·이학영·김민기·김제남·은수미·남인순·박홍근·최민희·박수현·배재정·박원석·윤호중·박완주·김기식·홍익표·홍종학·부좌현·이원욱·장하나·김광진·김성주·김재윤 의원 발의)

4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윤영석·이노근·이채익·조원진·정의화·안홍준·김한표·정우택·김동완·현영희 의원 발의)

4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인재근·진성준·김성주·장하나·박민수·정진후·한정애·민병두·홍종학·이인영·박지원·한명숙·김현미·김민기·윤관석·전순옥·김성곤·강동원 의원 발의)

4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신경민·정청래·전순옥·윤관석·배재정·김성곤·배기운·강창일·김상희·김윤덕·노웅래·정진후·진성준·전해철·정세균·남인순·김승남 의원 발의)

4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 의원 대표발의)(김제남·서기호·은수미·남인순·심상정·강동원·박원석·전순옥·정진후·부좌현 의원 발의)

5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김성곤·전순옥·윤관석·전병헌·배기운·김광진·인재근·남인순·유기홍·유성엽 의원 발의)

5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김성태·강기운·김한표·노철래·이강후·이이재·유재중·정문헌·김재경·최봉홍·김을동 의원 발의)

5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이상직·최원식·배기운·유성엽·박지원·최민희·윤후덕·윤호중·장하나·김성곤·문병호·김재윤·전순옥·노웅래·김승남 의원 발의)

54.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이명수·윤명희·황영철·유승우·최봉홍·이만우·조명철·이노근·이한성 의원 발의)

55.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이상직·최원식·배기운·유성엽·박지원·최민희·윤후덕·윤호중·장하나·김성곤·문병호·김재윤·전순옥·노웅래·김승남 의원 발의)

56.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김민기·은수미·박홍근·박수현·배재정·홍종학·박원석·

진성준·남인순·홍익표·이학영·김제남·윤호중·김기식·박완주·부좌현·이원옥·장하나·김광진·김성주·김재윤·최민희 의원 발의)

5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이만우·이한성·문정림·이자스민·심재철·정의화·최동익·류지영·윤재옥·李宰榮 의원 발의)

5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강은희·이만우·윤상현·이현승·이채익·김한표·신동우·문정림·김태원·심윤조·심재철·박명재·김종태 의원 발의)

5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배재정·부좌현·정청래·김우남·박수현·배기운·박남춘·김광진·은수미·김재윤·정진후·박원석·김경협·심상정·강동원·우원식·한정애·홍영표·한명숙·전병헌 의원 발의)

60. 국회의원 성명 표기에 관한 규칙안(장윤석·이한성·정문헌·이만우·이주영·유승우·박덕흠·박성호·김우남·경대수 의원 발의)
(17시34분)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35항까지 27건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8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9항부터 제47항까지 9건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8항부터 제52항까지 5건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4항과 제55항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6항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7항부터 제59항까지 3건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0항 국회의원 성명 표기에 관한 규칙안, 이상 49건의 법률안과 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제60항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각각 제안설명을 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노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이노근 의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2시간

반을 기다렸습니다, 꼭 와서 해 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미리 적정한 시간을 배정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얼마나 시간이 아깝습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법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서울 노원갑 출신 이노근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본 의원이 지난 7월 26일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회의원이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발언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언행 등으로 사회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종전 국회법 146조를 보면, ‘146조(모욕등 발언의 금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이것이 핵심적인 조항입니다. 이것에 대한 개정안을 낸 겁니다.

개정안을 보면 범위를 좀 확대해서 종전의 내용에플러스시켜서 국회의원이 직무활동 중 다른 사람을 모욕·비하·희롱하는 발언을 할 수 없도록 추가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적인 조항이고요.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법의 발의 취지에 공감하시어 법안심의 과정에서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환 이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60항 국회의원 성명 표기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장윤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倫碩 議員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애쓰시는 국회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국회 전체의 원활한 운영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한 2시간가량 방청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인내를 해 가면서 위원회를 이렇게 원만하게 운영하신 최경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운영위원님들께 거듭 경의를 표합니다.

검찰청·법원에 가면 시차제 소환이 있거든요.

국회도 앞으로 시차제 소환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존경하는 최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경북 영주 출신 장윤석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국회의원 성명 표기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상임위 회의실에서의 의석 명패나 또는 여러 의안 등의 성명 표기는 그때그때 의원의 선호에 따를 뿐 표기에 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특히 의원이 한글·한자 병용을 원하는 경우에도 병용 표기를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국회의원이 성명 표기를 한글과 한자 양자택일이 아니라 한글, 한자, 한글·한자 병용의 세 가지 방식 중에 어느 하나를 국회의원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규칙안은 실무적으로 국회사무처와 미리 협의도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사무처 관계관의 보고에 의하면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회의장의 명패는 한글·한자 병용 표기에 기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고 성명을 인식하는 데도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아울러 이 규칙안에는 동명이인일 경우에는 식별 숫자를 붙여서 구별하고 긴 성명에 대하여는 약칭 표기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두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님,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님 또 윤상현·정성호 여야 수석님 그리고 존경하는 운영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규칙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환 장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4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이들 안건들은 모두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안들이고 주로 우

리 국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대부분 출석하지 아니한 이 자리에서 대체토론을 진행하기보다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서 바로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히 논의되도록 하고, 다만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소위원회 안건 심사에 참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들 안건들을 바로 국회운영제도개선 소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국회의원 상호경조금 현황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의원 상호경조규약에 의하여 의원님들의 세비에서 매월 2만 원씩 각출하여 국회의원 상호경조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 규약 제5조에 따르면 국회사무총장은 매년 정기국회 말에 의원상호경조에 관한 경리사항을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도 국회의원 상호경조금 현황보고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서면으로 보고되어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석 위원(24인)

강 은 희	김 진 태	김 태 흠	김 한 표
김 현	류 지 영	박 민 수	백 군 기
부 좌 현	신 동 우	윤 상 현	윤 재 옥
은 수 미	이 완 영	이 우 현	이 헌 승
전 병 현	전 해 철	정 성 호	정 진 후
진 성 준	최 경 환	홍 익 표	홍 지 만

○청가 위원(1인)

최 동 익

○위원 아닌 출석 의원(2인)

이 노 근 장 윤 석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원

수 석 전 문 위 원	진 정 구
입 법 심 의 관	조 기 열

○국회측 참석자

국회사무처

사 무 총 장	정 진 석
기 획 조 정 실 장	조 용 복

국회도서관

도서관장직무대리	홍 기 철
기 획 관 리 관	김 광 진

국회예산정책처

처 장	국 경 복
기 획 관 리 관	손 석 창

국회입법조사처

처 장	고 현 옥
기 획 관 리 관	이 정 화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박 준 우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주 철 기
총 무 비 서 관	이 재 만
국 가 안 보 실 차 장	주 철 기

대통령경호실

차 장	박 중 준
기 획 관 리 실 장	정 동 활

국가인권위원회

위 원 장	현 병 철
사 무 총 장	손 심 길
기 획 조 정 관	김 성 준

【보고사항】

○위원 사임 및 보임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장하나	부좌현	민주당	2013. 12. 13

○의안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2013. 12. 5 이완영·이우현·김한표·문정림·류지영·이채익·이헌승·김진태·신동우·김상민·김학용·김태흠·안종범·홍지만·강석호·윤진식·윤재옥·권성동 의원 발의)
12월 6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2013. 12. 6 안홍준·이만우·김성곤·정문현·윤재옥·신계륜·윤영석·정의화·김우남·박인숙·문정림 의원 발의)
12월 9일 회부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3. 12. 9 양승조·이낙연·박수현·강기정·

김용익 · 백재현 · 박홍근 · 유기홍 · 한명숙 ·
배기운 의원 발의)

12월 10일 회부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0 정희수 · 김성찬 · 송영근 · 윤명희 ·
심학봉 · 손인춘 · 정갑윤 · 김한표 · 김종태 ·
김태환 의원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0 김광진 · 배기운 · 전순옥 · 이춘석 ·
이학영 · 이원욱 · 박홍근 · 백재현 · 진성준 ·
진선미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1일 회부됨

○의안 회송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2013. 6. 27 진성준 · 전정희 · 김태년 · 배기운 ·
조정식 · 박영선 · 인재근 · 한정애 · 배재정 ·
임수경 · 최민희 · 은수미 · 이미경 · 김현미 ·
이찬열 · 문희상 · 윤호중 · 이목희 · 백재현 ·
이용섭 · 정호준 · 김광진 · 유대운 · 신장용 ·
최규성 · 노웅래 · 유승희 · 윤후덕 · 홍의락 ·
김현 · 이상민 · 김민기 · 최원식 · 박홍근 ·
변재일 · 이언주 · 전병헌 · 임내현 · 이종걸 ·
김동철 · 박완주 · 진선미 · 한명숙 · 김상희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13. 10. 4 정청래 · 배기운 · 유성엽 · 홍종학 ·
전순옥 · 배재정 · 김성곤 · 최민희 · 이춘석 ·
김재윤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13. 10. 8 진선미 · 진성준 · 이학영 · 김제남 ·
은수미 · 남인순 · 박홍근 · 최민희 · 박수현 ·
배재정 · 박원석 · 윤호중 · 박완주 · 김기식 ·
홍익표 · 홍종학 · 부좌현 · 이원욱 · 장하나 ·
김광진 · 김성주 · 김재윤 · 최민희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10일 의장에게 회송